

투자자를 위한 정보

체코 내 외국인의 취업 및 비즈니스를 위한 비자, 노동 및 체류허가

체코 내 외국인의 취업 및 비즈니스를 위한 비자, 노동 및 체류허가

본 안내책자 준비 과정에서 보여준 노동복지부, 내무부, 외무부, 경찰외사과의 전문적 조언과 협력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함.

차례

| | | |
|--------|--|----|
| 1. | 일반정보 | 2 |
| 2. | 제 3국 출신 외국인의 체류(EU/유럽경제연합/스위스)4 | 3 |
| 2.1 | 단기비자 (통합 쉹겐비자) | 3 |
| 1.1.1 | 공항통과 비자 | 3 |
| 2.1.2 | 단기 비자 | 3 |
| 2.2 | 장기비자-90일 이상 체류비자 | 4 |
| 2.2.1 | 장기비자 취득 절차 | 5 |
| 2.2.2 | 취업목적 장기비자 | 5 |
| 2.2.3 | 사업목적 장기비자(사업목적=자영업자, 회사 또는 조합의 법정대표 또는 법정조직의 회원) | 6 |
| 2.2.4 | 장기비자와 장기 체류허가 연장 | 6 |
| 2.3 | 장기체류 허가 | 7 |
| 2.3.1 | 체류허가 증명서(장기 및 영주)-생체인식 증명서 | 7 |
| 2.4 | EU 해당 규정에 따라 특별 발급되는 장기체류 허가 | 8 |
| 2.4.1 | 체코내 동반가족 목적 장기체류 허가 | 8 |
| 2.4.2 | 다른 EU회원국 거주민의 장기체류허가 | 9 |
| 2.5 | 취업허가 | 10 |
| 2.5.1 | 사업주 | 10 |
| 2.5.2 | 근로자(외국인) | 12 |
| 2.6. | 그린카드 | 13 |
| 2.6.1 | 일반 정보 | 13 |
| 2.6.2 | 사업주 | 14 |
| 2.6.3 | 근로자(외국인) | 15 |
| 2.6.4. | 그린카드 취득자 가족 | 16 |
| 2.7 | 블루카드 | 17 |
| 2.7.1 | 일반 정보 | 17 |
| 2.7.2 | 블루카드 신청 | 17 |
| 2.7.3 | 블루카드 발급신청 구비서류 | 18 |
| 2.7.4 | 블루카드 취득자 가족 | 18 |

체코 내 외국인 체류

1. 일반정보

체코의 외국인체류 관련 규정은 체코내 외국인 체류에 관한 법령 및 일부개정 법령(이하 „외국인법“) 제 326/1999조에서 정하고 있다. 현행 개정법령은 체코 내무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www.mvcr.cz) 외국인법에 의하면 외국인은 EU국민(가족 포함)과 기타 제 3국 출신의 외국인으로 구분된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출신의 유럽경제연합 국민과 그의 가족, 스위스 국민과 그의 가족은 EU국민에 준한다.

체코내 외국인 체류는 EU/ES의 법령 규정을 따른다. 유럽 의회와 이사회(ES)의 비자법에 관한 810/2009시행령(„비자법“) 및 위원회 시행령 539/2001(최신 개정판)에서는 EU 역내 입국시 비자 취득의 의무가 있는 제 3국 국민과 비자면제 국가 목록을 규정하고 있다

체코의 쉥겐국 가입일인 2007년 12월 21일부터 쉥겐통합법령(Schengen acquis)이 체코에서 적용된다.

15세 이상의 외국인은 자신의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본인이 직접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동반여권에 기재된 15세 이하의 어린이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 개인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다른 EU 회원 국가에서 장기체류 허가나 영주허가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체코 내 체류시 특별한 규정에 따른다.

제 3국 출신 외국인의 체코 내 체류 비자 의무 면제

셡겐 지역의 비자면제 국가 목록은 ES 시행령 539/2001에 규정되어 있으며 체코 내무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http://www.mvcr.cz/clanek/podminky-vstupu-a-pobytu-cizincu-na-uzemi-ceske-republiky-701621.aspx>

비자의무 면제 외국인은 쉡겐영내에 최초 입국일로부터 반 년간 체코 영내나 기타 쉡겐국가에 무비자로 3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각 쉡겐국가에서의 체류기간이 합산).

체코 공화국과 쉡겐지역 입국 비자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예,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크로아티아) 국민의 경우 체코 영내에 해당 협정에 명시된 기간동안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단, 취업 등 영리활동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비자의무 면제대상 외국인일지라도 체류허가(예, 취업허가) 및 비자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취업비자 허가 취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2.5.항 참조).

체코내에서 3개월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해당 체코 대표부에서 장기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2장 참조.

비자의무를 지니는 제 3국 출신 외국인의 체코 내 체류

비자의무를 지니는 국가의 국민은 체코 입국이나 체코 내 체류를 위해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외국인은 체코 내에서의 예상 체류기간에 따라 단기비자나 장기비자를 신청한다.

단기비자(일명 통합 쉡겐비자)-공항통과비자와 3개월미만 체류비자-비자에 명기된 기간동안의 체류를 허가한다. 3개월 미만의 체류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체코 영내 체류를 포함, 쉡겐영내 최초 입국일로부터 반 년의 기간동안 중 쉡겐지역의 총 체류일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비자 유효기간은 최장 5년이다 (2.1.항 참조).

장기비자(개별국비자)-90일이상 체류비자-3개월 이상 체코 내 체류를 허가하는 비자로 최장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2.2.항 참조).

체코 내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비자신청 이전에 근무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취업허가서를 신청해야 한다. 이 의무는 단기비자, 장기비자 모두 해당된다.



2. 제 3국 출신 외국인의 체류(EU/유럽경제연합/스위스)

2.1 단기비자 (통합 쉥겐비자)

통합 쉥겐비자는 공항통과비자(A형)와 90일미만 체류비자(C형)가 있다. 통합 쉥겐비자는 쉥겐지역내 모든 국가의 입국과 체류를 위한 모든 조건에 부합하고, 쉥겐지역 첫 입국일로부터 6개월 기간 중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쉥겐지역에 체류하고 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한다. 단기비자에 관한 조건은 비자법 ES 810/2009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체코 공화국의 통합 쉥겐비자 발급의 경우:

- a) 체코 공화국이 신청자의 유일하고 주요 여행목적지인 경우
- b) 신청자의 다음 여행지가 불분명하고 체코 공화국이 그 최초 여행국인 경우

통합 쉥겐비자는 신청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때 발급된다¹⁾:

- 1) 유효한 여권과 구비 서류(규격 사진과 신청서 증명서류)를 포함한 비자신청서 제출시
- 2) 지문 채취 의무를 지닐 경우 지문 채취에 응할 때
- 3) 비자 수수료 납부 시
- 4) 비자가 부착될 여권이 모든 쉥겐국의 입국에 지장이 없을 경우
- 5) 입국금지 거부 대상자가 아닐 경우(쉥겐 정보시스템에 기록이 없는 경우)
- 6) 해당비자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할 때; 쉥겐국내에서 모든 협약국 내의 체류기간동안 부상이나 갑작스런 발병으로 인한 치료비용 및 환자이송 비용으로 최소 30,000EUR의 보험료를 커버할 수 있는 여행자 의료보험증을 제출 할 때; 두 번의 입국이나 다수 입국 비자가 발급되었을 경우 외국인은 쉥겐협약국 내의 각각의 체류 시마다 여행자 의료보험에 가입했다는 신서를 해야함
- 7) 쉥겐국 내 체류 기간 동안 체류국의 안보나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쉥겐국의 국제관계를 위협할 만한 위험 사유가 없을 때.

신청서 심사 및 비자발급 결정은 신청자의 체류허가를 발급한 해당 EU회원국의 영사관에서 하거나,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EU 회원국의 영사관에서 해당 영사관에 신청서를 제출한 사유를 제시할 경우 발급한다.

2.1.1 공항통과 비자

공항통과 비자-외국인이 체코영내나 쉥겐영내에서 연결 항공편-중간 기착지나 다른 국제항공편 환승을 위한 이동구간-을 기다리는 동안 국제공항 환승지역에서 체류를 허가하는 비자다. 체코영내의 국제 공항에서 공항통과비자로 환승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는 개정법령 시행령 446/2005에 규정되어 있다. 편도 비자와 왕복비자로 발급된다.

공항 비자는 A형 비자라고 한다

2.1.2 단기 비자

단기 비자는 C형 비자로 표시하며 표시기간 동안 쉥겐지역에 표시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쉥겐국가에 최소 입국한 입국일 이후 6개월동안 누적 체류기간이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체코 국내 체류기간과 기타 쉥겐국가에서의 체류기간을 합산한다.)

발급형태:

- 1) 단수-한 번의 입국과 3개월까지 체류
- 2) 두 번의 입국-두 번의 입국이 가능하며 3개월까지 체류
- 3) 복수-반복적인 입국이 가능하며 3개월까지 체류 가능; 비자의 유효기간은 최장 5년. 다만, 누적 체류기간은 쉥겐국가 입국일 이후 6개월 기간 동안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¹특수한 경우에 신청자가 통합 쉥겐비자 취득조건을 만족시키지 못 할 경우에도 단기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일명 유효국 제한 비자이다. 통합 쉥겐비자가 아닌 유효국 제한비자 취득자는 지정된 비자발급 대상국에서만 체류할 수 있다(예, 체코 공화국 또는 체코 공화국과 기타 국가).

단기비자 신청자는 비자 수수료가 통상 면제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60EUR(6-12세 어린이는 35EUR)의 비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쉥겐비자 신청 수수료는 유럽 연합국 및 당사국간 비자발급 수속 간소화에 관한 협정에 따라 규정된다. 상기 협정에 의하여 몰다브,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러시아, 그루지아는 35EUR의 비자수수료를 부과한다.

단기비자 발급 절차:

- 규정된 구비서류와 „쉥겐비자 발급 신청서“를 제3국(쉥겐국 역외)의 체코 대표부에서 신청한다. 신청양식은 체코 외무부의 웹사이트나 개별 대표부에 비치되어 있다
- 체코 대표부는 신청서를 심사하여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 비자는 신청장소와 동일한 대표부에서 수령한다
- 비자발급 처리 법정기한은 최대 15일이나, 통상적으로 더 빨리(1주일 이내) 처리된다. 특별한 사안의 경우 비자발급 시일이 30일에서 60일까지 소요되기도 한다

여권, 출생증명서, 사진을 제외한 모든 비자신청 관련 구비서류는 그 유효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못 한다. 모든 외국어 원본 서류는 체코어로 공증번역되어야 한다.

체코내 거주지 신고

단기 비자로 입국한 제3국 출신 외국인의 경우 체코 공화국 입국일로부터 3일 내에 외사부 담당과에 거주 신고를 해야한다; 15세 미만의 외국인 및 당해 사실을 숙박업자에게 기 신고한 외국인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

단기비자 신청시 제출 서류

- 예상 체류일보다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길고 과거 10년 이내에 발행된 여권
- 신청자의 실제 모습 사진 1장(4.5x3.5cm) * 지문채취 협조
- 여행 목적이 기재된 서류- 증명서류 예제목록은 비자법 부록 2에 제시; 체류 목적이 취업일 경우 체코 노동청이 발행한 취업허가서
- 체코 내 체류기간 동안의 숙박 확인서나 숙박을 위한 충분한 재정확보 증명 서류
- 예상 체류기간 동안 전체 쉥겐국 내에서 유효한 여행자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류. 최소 보험금 커버 액은 30,000EUR이다. 외국인이 복수 비자발급을 신청한 경우 각각의 체류별로 별도의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²
- 예상 체류일 동안의 생활비, 체코에서 본국이나 거주지로의 출국 또는 입국 허가를 받은 제3국 거주지로의 이동과 관련된 비용확인 증명서나 합법적 수단으로 이러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³
- 신청한 비자기간의 만료 전에 쉥겐국을 떠난다는 신청자의 의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요청이 있을 경우 비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⁴

2.2 장기비자-90일 이상 체류비자

장기비자는 체코 내에 3개월 이상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장기비자는 6개월 유효기간으로 발급되며 체코 국내에 반복적인 출국과 입국이 허용된다.

장기비자는 단수 목적(취업, 사업, 학업, 연구, 외국인과의 가족동반, 의료, 기타 목적) 비자 또는 복수 목적(취업+사업, 취업+학업) 비자가 있다. 외국인은 신청서에 각각의 체류목적에 요구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429/2010은 외국인 본인의 국적 국가(외국인이 소지한 여권의 발행국 또는 외국인이 장기체류 영주권을 취득한 국가를 포함) 외에서 비자발급, 장기체류증 발급 또는 영주권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국가 목록을 규정하고 있다. 기타의 경우 외국인은 장기비자 신청서를 현지 체코대표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비자 여권 소지자는 쉥겐협약국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포함) 내에 3개월까지 체류 가능하다.

²2009년 7월 13일의 유럽 의회와 이사회(ES)의 비자법에 관한 810/2009시행령(„비자법“) 참조

³2번 참조

⁴2번 참조

2.2.1 장기비자 취득 절차

- „장기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체코 대표부에 본인이 직접 제출한다⁵ (신청양식은 체코 대표부나 체코 대표부 웹사이트, 체코 외무부 웹사이트에 구비되어 있다)
- 체코 내부부의 신청서 심사 및 승인을 거쳐 체코 대표부가 여권에 장기비자를 부착한다. 비자는 체코 내에서 부착할 수 없다
- 비자 수령은 비자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체코 대표부에서 수령한다
- 비자발급 신청서의 법정처리 기한은 신청서 접수 후 90일이나(복잡한 사안의 경우 120일) 통상 더 빠른 기일 내에 (2-3개월) 처리가 되고 있다. 일부의 경우(학업 또는 학술연구목적 시)에는 처리기간이 60일이다
- 모든 외국어 원본서류는 양국간 협정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체코대표부에 의해 슈퍼래갈리제이션을 해야 하거나 아포스티유를 부착해야 한다

대표부는 외국인 신청자에게 장기비자 신청 기일을 사전에 예약하고 인터뷰에 응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사업목적 장기비자의 경우 신청자는 필히 인터뷰에 참석해야 한다.).⁶

비자 신청서가 거부되었을 경우 동 사실은 거부사유와 함께 우편으로 전달되며, 이때 외국인은 거부통지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체코 내부부에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비자발급 신청 구비서류 중 여권, 출생증명 서류, 실제 모습과 동일한 사진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한다.

체코 영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의료에 필요한 비용지불 확인증(여행자 의료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을 제시하여야 한다.

체코 국내 거주지 신고

장기비자로 입국한 제 3국 출신 외국인의 경우 체코 공화국 입국일로부터 3일 내에 외사부 담당과에 거주 신고를 해야한다. 15세 미만의 외국인 및 당해 사실을 숙박업자에게 기 신고한 외국인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

2.2.2 취업목적 장기비자

구비 서류

- 예상 체류일보다 유효기간이 3개월이상 길고 과거 10년 이내에 발행된 여권
- 신청자의 실제모습과 동일한 사진 2장 (4.5 x 3.5 cm); 접수처에서 사진을 직접 찍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체류목적 증명하는 서류(취업허가서 또는 취업허가 발급 신청번호, 취업허가를 관할 노동청에 신청한 서류)
- 명확한 체류기간이 명시된 체코 내 거주지 확인증; 거주확인증으로서 인정되는 서류
 -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의 소유주임을 증명하는 문서
 - 해당 아파트나 주택 임대 증명서
 - 아파트나 주택의 소유주의 공증 된 외국인 숙박 동의서

요구시 제출서류

- 외국인 본국의 무범죄 사실 증명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관련 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본인의 선언서
- 외국인이 지난 3년 동안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국가의 무범죄사실 증명서나 유사한 증명서. 이러한 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선언서
-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지 않다는 의사 진단서(법령 274/2004 보건부 시행령이 규정하는 질병)

⁵체코 대표부의 재량에 의해 사유가 분명한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⁶중국, 몽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태국, 백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터키, 세르비아, 알바니아, 몰다비아, 베트남 주재 체코 대표부는 장기비자 인터넷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VISAPOINT“). 상기 열거된 국가에서는 www.visapoint.eu 에서 VISAPOINT에 등록 후 장기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비자 부착 전 여행자 의료보험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동 서류로 외국인은 의료상 필요한 그리고 지체 불가능한 의료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여권 소지국이나 체류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국가로의 이송료를 포함한 비용을 보장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건당 보험료는 보험청구 발생 시 전액배상 조건으로 최소 60,000EUR를 커버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의료보험 증명서는 체코 공화국 또는 다른 EU회원국의 보험법에 따른 보험사나 EHP협약 가입국 또는 여권 소지국,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이 체류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국가에서 허가된 보험사가 발행해야 한다⁷. 외국인이 외국에서 체결한 보험일 경우 개인 부담없이 6,000EUR 전액 보장을 증명하는 보험계약 서류와 함께 체코어로 공증번역된 계약증서와 약관을 제출한다. 외국인은 요구 시에는 의료보험 서류에 명시된 보험금 납입에 대한 서류를 제출한다.

- 외국인이 체코 회사나 법인 등 기관에 의해 고용되었을 경우(개인 혹은 법인) 체코입국일로부터 고용 개시일까지 의료보험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만약 외국인이 과건형식으로 체코 사회보장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예상 체코 공화국 체류일 전체에 대한 의료보험(상기 제시된 조건대로)서류를 제출한다.

2.2.3 사업목적 장기비자(사업목적=자영업자, 회사 또는 조합의 법정대표 또는 법정조직의 회원)

구비서류

- 예상 체류일보다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길고 과거 10년 이내에 발행된 여권
- 신청자의 실체모습과 동일한 사진 2장 (4.5 x 3.5 cm); 접수처에서 사진을 직접 찍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 관할 등기소 등록에 관한 증명서류(사업자 등록증 또는 개인사업 등록증 등)
- 명확한 체류기간이 명시된 체코 내 거주지 확인증; 거주확인증으로서 인정되는 서류
 -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의 소유주임을 증명하는 문서
 - 해당 아파트나 주택 임대 증명서
 - 아파트나 주택의 소유주의 공증 된 외국인 숙박 동의서
- 외국인법 326/1999 13조 1항 a) 3에 의거 체류에 필요한 재정증명(재정증명 최소액은 101,000CZK-6개월 비자신청시). 외국인법 326/1999 13조 2항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재정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요구 시 제출 서류

- 외국인 본국의 무범죄 사실 증명서나 유사한 서류, 또는 관련 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본인의 선언서.
- 외국인이 지난 3년 동안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국가의 무범죄사실 증명서나 유사한 증명서. 관련 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선언서
-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지 않다는 의사 진단서(법령 274/2004 보건부 시행령이 규정하는 질병)

취업 또는 사업목적으로 체코 공화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가족들 역시 가족동반, 학업 또는 의료상의 목적으로 체코 공화국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하다. 이러한 종류의 비자신청에 관한 모든 정보는 체코 외무부와 내무부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 연구원의 경우 단기비자(2.1.2)나 장기비자(2.3.)를 신청한다.

2.2.4 장기비자와 장기 체류허가 연장

동일한 체류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체코 내 체류를 원하는 장기비자 소지자는 기본적으로 장기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장기비자 취득 시와 동일 체류목적일 경우 장기비자 유효기간 연장 대신에 장기체류증 발급형태로 연장이 이루어진다.

장기체류허가는 반복적으로 연장 가능하다(체코 내무부가 연장신청 심사). 연장 신청 구비서류는 최초 장기체류허가 신청 시 제출했던 것과 유사하다.

장기체류 허가 신청은 거주 신고 지역 관할 내무부 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제출한다. 신청서는 장기비자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늦어도 14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체코 내 장기체류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대 60일이 소요된다.

⁷체코 내에서 제출한 장기 비자신청이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 체코 내 영업허가를 받은 보험사와만 여행 의료보험을 체결할 수 있다. 체코 국립 은행 웹사이트 참조 <http://businessinfo.cz/cz/clanek/komerčni-druhy-pojisteni/seznam-pojistoven-a-pobocek-zahranicnich/1001912/6244/>

2.3 장기체류 허가

장기체류 허가 유효기간은 체류 목적에 따라 다르다⁸

- 취업목적(취업허가 유효기간과 일치)
- 사업목적(2년)

장기 체류허가 발급 구비서류

- 여권
- 신청자의 실제모습과 동일한 사진 2장 (4.5 x 3.5 cm); 접수처에서 사진을 직접 찍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 국내 체류 재정증명-당해 외국인과 체코 내 거주 동반가족의 월수입 총계가 외국인과 동반가족의 월 최저 생계비⁹와 특별법에 규정된¹⁰ 가족당 월 거주비용 또는 가족 주거비에 근거하여 제시된 금액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취업목적 체류는 해당 없음.
- 체류목적 증명 서류 ; 취업 목적의 경우-취업허가 확인증 또는 취업허가 연장 확인증, 사업목적의 경우 해당 등기소 등록 확인증 제출¹¹
- 명확한 체류기간이 명시된 체코 내 거주지 확인증; 거주확인증으로서 인정되는 서류
 -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의 소유주임을 증명하는 문서
 - 해당 아파트나 주택 임대 증명서
 - 아파트나 주택의 소유주의 공증된 외국인 숙박 동의서
- 개인 체납세금이 없다는 세무서 확인증-사업목적만 해당.
- 체코 내 영입허가를 받은 보험사가 발행한 여행자 의료보험 증명서(종합 의료보험)¹². 보험금은 예상 체류일 전체를 커버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이 서류로 종합 건강 관리비용이 보장돼 있음을 증명한다. 이는 계약 의료기관에서 가입자의 보험계약 이전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 부담없이 보험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의료를 말한다. 보험 약관에는 예방, 체제적 전문 치료, 임산부와 출산과 관련된 의료치료도 포함되어야 한다.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외국인 은 여행자 의료보험계약 지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 요청시 소득세 납부 평가 내역-사업목적 체류만 해당

장기체류 허가 신청은 거주신고 지역의 관할 내무부 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제출한다. 신청서는 장기비자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늦어도 14일 전에 제출한다.

체코 내 장기체류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대 60일이 소요된다.

유효한 장기체류 허가증이 부착된 여권 소지자는 기타 쉥겐협정국(스위스, 리스텐슈타인 포함) 영내에서 6개월 기간마다 3개월 까지 체류할 수 있다.

2.3.1 체류허가 증명서(장기 및 영주)-생체인식 증명서

체코 공화국의 장기체류 허가 또는 영주허가를 취득한 제 3국민의 경우 체류허가증에 생체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나, EU시민과 그 가족 그리고 비자 취득 후 체코에 체류하는 제3국민은 당분간은 생체 정보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다.

외국인은 생체정보(지문 채취 및 사진 기록) 채취일로부터 늦어도 60일이내에 내무부(내무부의 통지 후에)가 지정한 날에 체류 허가증 수령을 위해 내무부를 방문하여야 한다(2011년 7월 7일 이전에 발급된 체류허가증의 유효기간은 허가증에 명시된 기간 까지 유효하다). 신청자가 허가증을 기일 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신청절차가 취소된다. 신청자가 체코 공화국의 외국 주재 대표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가 수락되었을 경우 체코 국내 입국일로부터 3일 내에 생체정보 채취를 위해 지정된 체코 내 무부의 지역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⁸달리 규정이 없을 경우 외국인은 체류허가증에 기재된 기간 동안 체코 내에 거주할 수 있다.

⁹개정법 최저 생계비에 관한 법령 110/2006 26조 1항 참조

¹⁰개정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령 117/1995 26조 1항

¹¹특별법에 따라 취업허가서가 취업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 취업허가서를 제출할 필요 없다(체코 내 외국인 체류법 개정법령 326/1999 31조 2항, 근로법 개정법령 98조).

¹²7번 참조

2.4 EU 해당 규정에 따라 특별 발급되는 장기체류 허가

장기체류 허가는 2.3항에 명시된 경우 외에도 ES에 규정된 특수한 경우에도 발급된다. (2003년 9월 22일 가족동반 권리에 관한 2003/86/ES 위원회 지침서, 2003년 11월 25일 장기 체류 중인 제 3국 국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2003/109/ES 위원회 지침서). 이 경우 장기비자 취득 후 체코 국내 체류 조건에 충족하지 않아도 장기체류 허가가 발급된다.

유효한 장기체류 허가가 부착된 여권 소지자는 기타 쉥겐협정국 영내에서 6개월 기간동안마다 3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2.4.1 체코내 동반가족 목적 장기체류 허가

가족동반 목적으로 장기체류 허가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인 체류허가를 취득한 외국인의 배우자, 체류 허가(장기체류 혹은 영주허가) 취득자의 미성년자 또는 성인인 부양 자녀, 체류허가(장기체류 혹은 영주허가) 취득자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 또는 성인인 부양 자녀이다.

가족동반 장기체류 허가 발급조건은 허가대상 본인이 장기체류 혹은 영주허가 취득자로서 최소 15개월 동안 체코내에 체류해야 한다;배우자 동반 가족의 경우 동시에 부부가 20세 이상이어야 한다(만약 둘 중 하나가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 할 경우 동반가족 목적 장기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이 A형 그린카드 소지자이고 동시에 이미 체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 또는 B형 그린카드 소지자이며 이미 체코 국내에 최소 1년을 체류하거나 그린카드 소지자일 경우이다.

가족동반 장기체류 허가 신청은 외국 주재 체코대표부에 제출한다; 체코 국내에서 장기비자 혹은 다른 목적으로 장기체류 허가를 취득하였을 경우 체코 내무부의 지역 관할 사무소에 신청한다.

시행령 429/2010은 외국인 본인의 국적 국가(외국인이 소지한 여권의 발행국 또는 외국인이 장기체류나 영주권을 취득한 국가를 포함) 외에서 비자발급, 장기체류증 발급 또는 영주권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국가 목록을 규정하고 있다.

신청서 구비서류

- a) 여권
- b) 신청자의 실제모습과 동일한 사진 2장 (4.5 x 3.5 cm); 접수처에서 직접 사진을 찍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 c) 가족관계 증명서
- d) 어린이가 부모, 법정대리인 등 가족동반없이 체코에 체류할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e) 국내 체류 재정증명-외국인과 체코 내 거주 동반가족의 월수입 총계가 외국인과 동반 가족의 월 최저 생계비와 특별법에 규정된 가족당 월 거주비용 또는 가족 주거비에 근거하여 제시된 금액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 f) 체류기간 동안의 거주지 확인증; 거주확인증으로 인정되는 서류
 -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의 소유주임을 증명하는 문서
 - 해당 아파트나 주택 임대 증명서
 - 아파트나 주택의 소유주의 공증 된 외국인 숙박 동의서

요구 시 제출 서류

- a) 외국인 본국의 무범죄 사실 증명서나 유사한 서류, 또는 관련 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본인의 선언서.
- b) 외국인이 지난 3년 동안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국가의 무범죄사실 증명서나 유사한 증명서. 이러한 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선언서
- c)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지 않다는 의사 진단서(법령 274/2004 보건부 시행령이 규정하는 질병)

가족동반 목적의 비자신청자는 비자수령 이전 여행자 의료보험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동 서류를 통해 건강상 위급한 의료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여권 소지국이나 체류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국가로의 이송료를 포함한 비용을 보장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건강 보험료는 보험청구 발생시 전액배상 조건으로 최소 60,000EUR를 커버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의료보험 증명서는 체코 공화국 또는 다른 EU회원국의 보험법에 따른 보험사나 EHP협약 가입국 또는 여권 소지국,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이 체류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국가에서 허가된 보험사가 발행해야 한다. 외국에서 체결한 보험일 경우 개인 부담없이 60,000EUR 전액 보장을 증명하는 보험계약 서류와 함께 체코어로 공증번역된 계약증서와 약관을 제출한다. 별도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료보험 서류에 명시된 보험금 납입에 대한 서류를 제출한다. 보험은 예상 체류일 전체를 커버해야 한다.

체코 내에서 신청한 가족동반 목적 장기체류 허가 신청서의 경우 외국인인 체코 내 영업허가를 받은 보험사가 발행한 여행자 의료보험 증빙서류(종합 의료보험)를 제출한다¹³

¹³7번 참조

별도 요구 시 외국인인 여행자는 의료보험증에 기재된 보험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족동반목적의 장기체류 허가 발급에 필요한 법정 소요일은 신청일로부터 270일이다.

가족동반 체류허가 기간은 장기체류허가 본 당사자에게 부여된 유효기간과 동일하며, 체류허가 당사자가 영주허가를 취득했을 경우 유효기간은 2년이다.

가족동반 목적의 체류허가 유효기간은 반복적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최소 1년). 연장신청 구비서류는 장기체류 허가 신청 시와 유사하다.

2.4.2 다른 EU회원국 거주민의 장기체류허가

다른 EU회원국의 거주민으로 장기체류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EU국가에서 장기 체류 거주민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자로 체코 공화국에서 3개월이상 일시적으로 머무르고자 하는 제 3 국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다른 EU회원국 거주자로서 장기체류 허가증 신청은 외국 주재 체코대표부나 체코 내 관할 내무부 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체코 내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임시체류 유효기간 내에 그리고 체코 입국일로부터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른 EU회원국 거주민의 장기체류허가 제출서류

- 신청자의 실제모습과 동일한 사진 2장 (4.5 x 3.5 cm); 접수처에서 직접 사진을 찍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체류목적 증명서류, 예) 취업허가서(장기비자 신청 참조)
- 다른 EU국 거주민임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 의료보험 증명서류

체코 외 다른 EU 회원국 거주민의 장기체류 허가의 경우, 이 서류로 외국인인 건강상 위급한 의료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여권 소지국이나 체류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국가로의 이송료를 포함한 비용을 보장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건강 보험료는 보험 청구 발생 시 전액 배상 조건으로 최소 60,000EUR를 커버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의료보험 증명서는 체코 공화국 또는 다른 EU회원국의 보험법에 따른 보험사나 EHP협약 가입국 또는 여권 소지국,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이 체류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국가에서 허가된 보험사가 발행해야 한다¹⁴. 외국에서 체결한 보험일 경우 개인 부담없이 60,000EUR 전액 보장을 증명하는 보험계약 서류와 함께 체코어로 공증번역된 계약증서와 약관을 제출한다. 외국인은 요구 시에는 의료보험 서류에 명시된 보험금 납입에 대한 서류를 제출한다.

취업 체류목적지:

- 외국인이 체코 회사 또는 법인 등 기관에 의해 고용되었을 경우(개인 혹은 법인) 체코 입국일로부터 고용계약서 발효시일(고용 개시일)까지 의료보험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만약 외국인이 파견형식으로 체코 사회보장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예상 체코 공화국 체류일 전체에 대한 보험서류를 제출한다.

체코 내에서 제출한 다른 EU회원국 거주민의 장기체류 허가의 경우 체코 국내영업허가를 받은 보험사15 가 발행한 여행자 의료보험증(종합 의료보험)을 제출한다. 보험은 예상체류일 전체를 커버해야 한다. 이 보험증으로 종합의료 행위에 필요한 비용 보장을 증명하게 된다. 종합 의료행위란 계약 의료기관에서 보험계약 전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자의 본인 부담없이 행해지는 의료행위이다. 보험혜택 중에는 예방, 체계적 전문 관리, 임산부와 출산과 관련된 의료행위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체류기간 동안의 거주지 확인증; 거주확인증으로 인정되는 서류
 -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의 소유주임을 증명하는 문서
 - 해당 아파트나 주택 임대 증명서
 - 아파트나 주택의 소유주의 공증 된 외국인 숙박 동의서
- 체코 내 체류하는 동안 가족의 월 총수입이 다음 합산액보다 낮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동반가족의 최저 생계비
 - 특별법에 규정된 가족 월 거주비용 또는 가족 주거비에 근거하여 제시된 금액

¹⁴12번 참조

¹⁵12번 참조

요구 시 제출서류

- 외국인 본국의 무범죄 사실 증명서나 유사한 서류, 또는 관련 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본인의 선언서.
- 외국인이 지난 3년 동안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국가의 무범죄사실 증명서나 유사한 증명서. 관련 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선언서
-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지 않다는 의사 진단서(법령 274/2004 보건부 시행령이 규정하는 질병)

다른 EU 회원국 거주민의 가족도 체류허가증을 소지한 거주민의 가족동반 자격으로 체류허가증을 취득하였거나 다른 EU회원국의 거주민으로 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도 다른 EU회원국 거주민으로 장기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른 EU회원국 거주민의 동반가족 장기체류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는 체류허가 시 당사자가 제출한 구비서류들과 같다; 다만, 체류목적 증명서 및 EU회원국 거주민 증명서는 당해 동반가족 장기체류허가 신청자가 소지한 EU회원국의 동반가족목적 거주허가 관련 증명서류로써 대신한다.

다른 EU회원국 거주민과 그의 동반가족 장기체류 허가 처리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20일까지이다.

다른 EU 회원국 거주민의 장기체류 허가는 1년이하의 경우 체류목적에 필요한 유효기간 동안 발급되며 기타의 경우는 2년이다. 다른 EU회원국 거주민 동반가족의 경우 거주민에게 발급된 장기체류허가의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발급된다.

다른 EU회원국 거주민의 장기체류 허가는 반복적으로 연장 가능하다. 연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장기체류허가 취득 신청 시와 유사하다.

2.5 취업허가

제 3국의 국민은 근로법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체코 국내에서 유효한 취업 허가서 및 체류 허가서를 취득하였거나 그린카드 내지 블루카드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취업이 가능하다. 근로법에 의한 취업이란 주주, 법정대표, 조합원으로서 또는 조합과 관련한 법정조직 및 기타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법인활동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이 취업 가능한 경우

- 체코 법인이나 개인과 고용계약 체결
- 체코 법인이나 개인이 외국 고용주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체코 내에서의 업무 수행을 위해 파견된 직원(파견직원과 그 가족이 EU회원국 시민이 아닌 경우)
- 체코 법인이나 개인과 외국 고용주와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체코 내의 법인이나 개인을 위해 자신의 직원을 임대하는 경우(파견직원과 그 가족이 EU회원국 시민이 아닌 경우)

2.5.1 사업주

- 체코 소재 사업주**-외국인이 체코법인이나 개인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체코에 소재지를 둔 사업주는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알선한 임시직 직원을 고용할 예정인 경우 관할 지방노동청에 10일 내에 (신설되거나 공석인 경우) 구인 통지를 한다. 자격문제 또는 노동 인력의 부족으로 구인에 실패할 경우에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는 사전에 지방 노동청에 고용예정 인원, 직종, 근무 예상기간 등의 외국인 고용 조건을 통지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 허가서“ 양식지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다 http://portal.mpsv.cz/sz/zahr_zam/tiskopisy.

다음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허가서가 필요하지 않다.

- 노동시장의 상황과 관계없이 취업허가가 발급된 경우(취업에 관한 개정법 법령 435/2004 97조)
- 취업허가가 불필요한 경우(취업에 관한 개정법 법령 435/2004 97조) 및
- 취업허가 연장을 신청한 경우, 또는
- 그린카드나 블루카드 소지자로 고용된 경우

외국인은 관할 지방 노동청에 취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업주는 다음의 경우 근무일 10일 내에 관할지방 노동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 외국인 구인 완료 통보
 - 취업허가서, 그린카드 또는 블루카드가 발급된 외국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서면 통지:
 - 결근 시(그린카드나 블루카드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45일 내 통지)
 - 취업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고용 종료시, 노동법 제 52조 a)-e) 중의 사유로 계약 해지 시, 같은 이유로 합의에 의하거나 노동법 제 56조에 따라 즉시 해지 시 고용종료 사유 제시¹⁶
- b) **외국에 등록된 사업주=외국 사업주**-체코 내에서의 업무 수행을 위해 체코에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과의 계약에 의해 외국 사업주가 파견한 외국 사업주의 외국인 직원

체코 측의 법인 혹은 개인은 외국 사업주와의 계약 전에 관할 지방 노동청에 파견 인원, 파견 직종, 파견 기일 등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계약서와 함께 „체코 내 법인 및 개인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약 신청서“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http://portal.mpsv.cz/sz/zahr_zam/tiskopisy)

체코 내 법인 또는 개인의 관할 지방 노동청 제출 서류:

- a) 아래 사본을 첨부한 체코 내 계약협의 법인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 관련 서류양식
- 법인 또는 개인의 체코 내 영업허가 서류
 - 외국 사업주 본국의 영업허가 서류
- b) 외국인 취업허가 신청서(행정비용 500CZK) 및 아래 첨부서류
- 신청자의 개인 신상이 기록된 여권 사본(확인 후 반환)
 - 체코 내에서 근무예정인 근로분야에 관한 증빙서류
 - 외국 사업주와 체결된 파견 직원의 고용 계약서
 - 외국 사업주와 체코의 법인 또는 개인과 체결된 계약서(모든 파견직원이 공통으로 사용 가능)

제출서류는 원본 혹은 공증사본을 제출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의 경우 체코어로 공증 번역 후 제출한다.

직무수행을 위해 외국인을 파견직원으로 받는 체코의 법인 또는 개인은 파견기간 동안 당해 외국인의 고용허가 및 체류허가에 관한 책임을 진다.

- c) **외국에 등록된 사업주=외국 사업주**-체코 내에서의 업무 수행을 위해 체코에 회사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과의 계약에 의해 외국 사업주에 의해 파견된 외국인 직원으로 노동력 임대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필요한 고용허가서를 취득하는 절차는 2.5.1.에 제시한 바와 유사하다.

관할 지방 노동청은 다음 전제 하에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 기술인력 결여나 유희 노동력 부족으로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 협의 한다.
- 체코 내에서의 외국인 취업알선 허가가 내려진 외국 사업주

법규정에 의거 유럽연합 기타 회원국에 알선을 목적으로 소재한 개인 또는 법인이 일시적으로 독점공급권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자는 체코 내에서 늦어도 이러한 활동을 개시한 날까지 체코 노동청에 하기 자료과 업무 수행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법인 의무 조항:
 - 법인식별 자료
 - 사업 종목
 - 알선 형태
 - 수행할 알선중재업종
 - 알선중재업 소재 관할 행정구역
 - 대표자의 신상 명세
- 개인 의무 조항
 - 개인 신상 명세
 - 사업 장소 및 종목
 - 알선중재 형태
 - 수행할 알선중재업종
 - 알선중재업 소재 관할 행정구역

¹⁶현행 개정 노동법령262/2006.

2.5.2 근로자(외국인)

외국인근로자 채용 회사에 구직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취업허가서“(이하 허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외국인은 체코 내에서 업무수행 개시 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청에 취업허가 신청을 한다.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이 해외로부터의 직무과건, 고용계약, 업무대행 등을 위해 체코 회사, 법인 등 기관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모든 경우에는 취업허가서가 필요하다. 취업허가서가 불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는 개정법 고용에 관한 법령 4335/2004에 규정하고 있다.

구비서류

- a) 신청자의 신상이 기록돼 있는 여권 사본, 확인 후 반환
- b) 사업주의 고용확인서
- c) 외국인이 수행하게 될 직위와 관련해 당해 외국인이 보유한 전문적 소양에 관한 증빙자료, 경우에 따라서는 채용 예정 일 자리에 적합한 지식 및 경험에 관한 증빙자료
- d) 행정비용 500 CZK
- e) 기타 관련 자료;
- f)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

제출서류는 원본 혹은 공증사본을 제출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의 경우 체코어로 공증 번역 후 제출한다.

파견 직원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

- a) 계약서 사본
- b) 계약 대상 업무수행을 위한 경제활동 주체의 허가 사본
- c) 외국 사업주와 체결한 노동 계약서

만약 계약서 하나에 다수의 취업허가가 필요할 경우 경제활동 주체의 계약서 사본이나 증빙서류 사본은 1부만 제출해도 된다.

노동력 임대 계약인 경우, 관할 지방 노동청은 다음 조건만으로 취업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외국사업주가 체코 내 외국인 고용알선, 중재허가를 취득한 경우
- 기술인력 결여 또는 유희 노동력 부족으로 체코 국내채용이 불가능할 경우
- 체코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도에 대해 노동청과 협의하며, 노동청은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 취업허가서 발급 여부를 결정

행정법상 취업허가서의 처리 기한은 30일이다. 특수한 경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신청서는 보통 1-2주에 처리된다.)

발급된 취업허가서는 지정된 사업주(경우에 따라서는 법인 또는 개인)와 지정된 직종, 지정된 장소에서만 유효하다. 만약 변경 사실이 있을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관할 지방 노동청에 신규 취업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외국인의 취업허가서 결정서는 공식적으로 신고된 일자리의 경우라면만 노동청이 발급한다. 취업허가서는 최장 2년간 유효하다.** 외국인은 취업허가서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에서 늦어도 30일 이전에 (반복적으로) 취업허가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취업허가서 연장 신청 시에는 사업주의 고용 확인서와 기본 신상명세가 기재된 여권 복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행정비용은 250CZK이다.

체코 내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유효한 취업허가서나 취업목적 체류비자 혹은 장기체류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노동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취업허가서를 발행하는 경우

- 최장 1년동안 일정 분야의 자질 향상을 위한(연수) 한시적 고용인 경우(단, 전문기술 습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기간연장이 가능)
- 체코공화국이 참여하는 학교 또는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에 만 26세 미만의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경우
- 체코에 등록된 종교기관의 종교인
- 체코 공화국의 이행의무가 있는 국제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우
- 체류법에 근거하여 피난체류목적으로 비자가 발행되었거나 같은 목적으로 장기체류허가가 발행된 경우
- 국제 신변보호 신청자 또는 망명법에 근거하여 피난체류목적으로 90일 이상의 비자가 발행된 자로서 망명신청서 제출 이후 최소 12개월이 경과된 경우

취업허가, 그린카드, 블루카드가 불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 a) 영주권 취득자
- b) 외교관, 영사관 직원 가족 또는 체코 의회의 승인으로 체코 정부가 의무를 지고 상호성을 보장하는 국제계약 시행령에 의해 근무하는 체코 소재 국제 정부기구 직원의 가족
- c) 망명이나 보충적 신분보호가 허용된 자
- d) 체코 국내에서의 업무가 근무일 연속 7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1년에 총 30일을 초과하지 않은 예술가, 교육가, 대학의 학술 연구자, 학술 집회의 과학, 연구, 기술, 개발 연구원, 26세 미만 학생, 스포츠맨 또는 체코 내에서 물품 공급 또는 서비스를 담당하거나 상업계약에 따라 상품을 공급하거나 조립, 경우에 따라서 보증, 수리 작업을 행하는 자
- e) 체코 의회가 승인하고 공포된 국제법에 규정하는 자
- f) 사고나 천재지변 시 사고 수습을 위해 국제 상호 공조 협정에 따라 구조대의 일원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자
- g) 국제 운송을 담당하는 근로자로 외국 사업주에 의해 체코 공화국내에 업무 수행을 위해 파견된 자
- h) 미디어업 분야의 인가 취득자
- i) 특별법에 의해 파견국 군대의 군인 또는 민간인 (법령 310/1999 체코 국내 기타국의 군대 주둔에 관한 법률)
- j) 체코 공화국 내에서 체계적으로 장래취업을 준비하는 자
- k) 다른 EU회원국에 소재한 사업주에 의해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체코 정부에 파견된 자
- l) a) 또는 c) 항의 동반가족에 해당하여 가족동반목적의 장기체류 허가로 체코 국내에 체류하는 자
- m) 다른 EU 회원국의 거주민으로 취업목적 장기체류 허가로 체코 내에 거주하며 장기체류허가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상이 경과한 자
- n) 체코 내에서 대학의 교수 요원 또는 학술 요원으로 교육 또는 학술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거나 특별법에 따라 공공 연구기관이나 기타 연구조직에서 학술, 연구, 개발요원으로 활동하는 자(법령 341/2005 공립 기술연구소법)
- o) a. 학교법에 따라 중등 또는 고등 전문교육, 기술학교에서 고등 전문교육을 받은 자, b. 대학교법에 따라 대학교육을 받은 자, c. 취학 전, 초등, 중등, 고등 전문과 기타 교육에 관한 개정법(학교법) 법령 561/2004; 대학 및 기타 법률의 개정과 보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법령 111/1998에 따라 대학교육을 받은 자,
- p) 유럽공동체(ES) 역내에 거주민의 자격을 가졌거나 장기체류 허가를 취득한 외국인의 동반가족으로 체코에 체류하거나, 이 기간 동안 최소 12개월 기간의 취업허가를 취득하거나, 그린카드를 취득한 자,
- q) 체코 내 ES거주민의 지위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과 동반가족으로 장기체류 허가증을 취득하여 체류하는 자-이전 블루카드 소지자, 또는 이전 블루카드 소지자로 다른 EU회원국 내에 ES 장기체류 거주민의 지위를 가진 자 a) 에서 e), j)에서 q) 항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자신의 외국 고용주와 업무이행 계약을 맺고 파견된 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나 법인, 개인은 늦어도 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개시일까지 이 같은 사실을 관할 지방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6 그린카드

2.6.1 일반 정보

취업법 개정법률 435/2004 및 체코내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개정법률 326/1999에 그린카드에 관해 규정되어 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http://portal.mpsv.cz/sz/zahr_zam/zelka, <http://www.mvcr.cz/sluzby-pro-vereinost-informace-pro-cizince.aspx> 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구체적 근무처를 대상으로 발행된 그린카드로 체코 내에 거주하면서 근무할 수 있다.

그린카드는 체류 및 취업허가를 위한 통합시스템으로서 체코 내 수요가 있는 자격증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의 체코 노동시장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린카드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다음 국가의 국민을 위한 제도이다: 호주, 몬테니그로, 크로아티아, 일본, 캐나다, 대한민국, 뉴질랜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미국,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상기 열거된 국가의 국민이 아니거나, 취업에 관한 법령 435/2004 제 98조에 명시된 예외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체코내 취업을 위해 블루카드를 신청하거나 취업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다.

주의사항: 유럽연합국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의 시민과 그의 가족은 체코 내에서의 취업을 위해 취업허가서나 그린카드, 블루카드가 필요하지 않다. 외국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 파견 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개인은 늦어도 고용개시일까지 관할 지방 노동청에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린카드는 3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A형: 대졸학력 이상의 주요기술인력 및 고급인력, B형은 자격증을 가진 중급 기술인력, C형은 기타 인력에 해당한다.

그린카드 A형과 B형은 신청 시 최장 3년 간 반복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그린카드를 취득한 외국인은 체코 국내에 1년 체류 후에 다른 목적의 장기체류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체코 내무부는 외국인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외국주재 대표부, 사업주, 경우에 따라서는 체코 공화국의 교육청소년체육부, 산업부, 보건부 등 기관의 추천을 받아 외국인이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린카드를 발부한다.

외국 주재 체코대표부는 그린카드 발급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의견서, 신청자와의 인터뷰 기록과 사업주 및 기타 기관의 의견을 첨부해 내무부의 의견제시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즉각 발송한다. 사업주가 외국인의 고용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경우 체코내무부는 그린카드를 발급하지 않는다.

2.6.2 사업주

외국인은 그린카드 발급대상 채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업종에 취업할 경우에만 그린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음 사항을 충족할 경우에만 그린카드 발급대상으로 선정된다.

- 사업주가 노동청에 채용 통지를 한 경우. 노동청으로부터 승인을 취득한 경우 인터넷을 통해 채용통지 가능
- 사업주가 채용정보 통지 시나 추가적으로 그린카드 발급대상자를 위한 채용정보 시스템에 공개에 동의한 경우
- 채용정보 공개 30일 후에도 공석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그린카드 발급대상 채용정보 시스템으로 등록된다.

체코 산업부가 고급인력 고용으로 적시한 일자리의 경우 30일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린카드 발급대상 채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채용으로 인해 인력 시장의 교란이 우려될 때(체코 노동복지부에서 결정)
- 고용에 관한 법령 435/2004 제 38조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할 때

그린카드 발급대상 채용정보 시스템에 등록되는 즉시 체코 내무부 시행 법령 461/2008에 지정된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는 그린카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권고사항:

- 신청서 제출 전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이력서를 제출할 것;
- 그린카드 발급 신청서 접수 후에 사업주에게 접수번호를 발송할 것(외국 주재 체코대표부 혹은 체코 내무부)
- 만약 사업주의 채용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사업주는 체코 내무부 망명. 이민국에 신청서 접수번호와 함께 문의한다.

체코 내무부는 그린카드 신청서 심사 후에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의 신청서가 승인되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통보 내용;

- 성명
-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
- 신청서 승인일
- 당해 외국인의 근로 직위
- 그린카드 발급 후 체코 내무부는 외국인의 그린카드 번호와 수령날짜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사업주의 지방 노동청에 대한 의무사항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처에 출근하는 경우:

사업주는 구인 완료에 대한 사실을 고용 개시 후 늦어도 근무일 10일까지 관할 지방 노동청에 신고하고 그린카드 번호를 명기한다.

외국인이 결근할 경우

사업주는 그린카드 취득자를 고용할 의무가 없다. 만약 외국인을 채용하지 않거나 외국인 스스로 기타 사유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처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방 노동청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그린카드 취득 후 늦어도 45일까지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린카드 발급 대상인 일자리의 경우 다시 그린카드를 위한 채용정보 시스템에 등록되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그린카드 유효기간 전에 소멸되는 경우

외국인의 고용관계 청산일로부터 늦어도 10일 내에 관할 지방 노동청에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고용관계 청산의 경우 사업주는 고용관계 청산 사유서를 제출한다.

노동법 52조 a)에서 e)까지 명시된 사유 중의 하나로 인한 계약 해지
같은 사유로 인한 합의
노동법 56조의 즉각적 고용관계 해지¹⁷

2.6.3 근로자(외국인)

그린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직종을 선택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한다.

a) 적합한 직종 찾기

그린카드는 체코 내 구체적 유휴 직종을 위해 발급한다. 그린카드에 적합한 직종은 특히 체코, EU/EHP, 스위스 출신의 인력 및 그 가족으로 대체되지 않은 직종이 그린카드 직종으로 주어진다.

그린카드 발급 대상 직종은 노동복지부 웹사이트의 그린카드 채용정보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다른 곳에서 알게 된 구체적 업종이 그린카드 발급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에 등록된 직종은 관련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며 그린카드 신청 양식도 구비되어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주에게 먼저 문의할 것을 추천한다. 사업주가 기타 채용정보에 대해서 상세한 안내를 해 줄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근로자는 사업주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할지를 확인할 수 있다. c)에 그 절차가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b) 그린카드 신청

그린카드 신청서는 외국 주재 체코대표부에서 신청한다. 법령 429/2010 시행령은 자국(소지여권 발행국, 장기체류허가나 영주권 발행국가도 이에 해당)이 아닌 제 3국에서 비자, 장기 체류허가, 영주권(그린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국가 명단을 규정하고 있다.

체코 대표부는 그린카드 신청자와 인터뷰를 할 수 있다.

하기의 경우 외국인인 체코 내 거주지에 따라 체코 내무부 망명.이민국에 그린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 자격으로 체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체코 국내의 체코 내무부에 그린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 (외국인법¹⁸ 제 46e조 3항 참조, 즉, 노동법 제 52조 a)항에서 e)항까지의 사유로 고용관계가 종료하거나 같은 이유의 합의나 노동법¹⁹ 제 56조에 의해 즉각적 해지에 의해 종료했다는 가정하에) 60일 보호기간 동안 그린카드와 신규그린카드 신청한 자
- 최소 1년의 그린카드 소지자
- 연속되는 최소 2년; 그린카드 발급대상 채용정보 시스템에서 채용됐다는 사실이 증명될 경우, 이 기간에 90일 이상 체류비자 기간과 장기체류허가 기간이 합산된다.

그린카드 신청서 양식은 노동복지부 웹사이트 http://portal.mpsv.cz/sz/zahr_zam/zelka에 구비되어 있다. 신청서는 인터넷상에서 작성하여 인쇄하거나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체코 외국 주재 대표부나 체코 내무부에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관심있는 직종의 고유번호와 근무조건을 기재해야 한다. 번호는 그린카드 발급대상 채용정보 시스템에 게재되어 있다.

추가 제출 서류

- 유효한 여권
- 실제 모습과 동일한 사진 2장-접수처에서 사진을 찍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직종에 요구되는 교육 및 전문 자격증 증명 서류; 원본서류와 원본서류가 외국어로 쓰여 있을 경우 체코어 공증

¹⁷16번 참조

¹⁸체코 내 외국인 체류에 관한법, 법령 326/1999와 일부 개정법에 관한 현행법

¹⁹현행법현행 노동법 법령 262/2006

요구 시 제출 서류

- 심각한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의사 소견서

체코 외국 주재 대표부에 1,000코룬 체코 화폐에 상응하는 신청 수수료를 지불한다.

신청서는 심사와 결정을 위해 체코 내무부 망명.이민국에 이관된다.

그린카드 수령목적으로 장기비자 부착 전에 외국인은 여행자 의료보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로 외국인은 건강상 위급한 의료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여권 소지국이나 체류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국가로의 이송료를 포함한 비용을 보장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건강 보험료는 보험 청구 발생 시 전액 배상 조건으로 최소 60,000EUR여야 한다. 의료보험 증명서는 체코 공화국 또는 다른 EU회원국의 보험법에 따라 보험사를 운영하는 보험사나 EHP협약 가입국 또는 여권 소지국,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이 체류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국가이다²⁰. 외국인이 외국에서 체결한 보험일 경우 보험계약 서류와 함께 체코어로 공증번역된 계약증서와 계약조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을 증명하고 보험금이 60,000EUR이며 전액보장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은 요구 시에는 의료보험 서류에 명시된 보험금 납입에 대한 서류를 제출한다. 그린카드를 취득한 외국인은 고용인의 지위로 공공 의료보험체계의 일부로 체코 국내 입국 시부터 고용 개시일까지의 여행자 의료보험에 관한 증빙서류만 제출한다.

c) 잠재적 사업주와의 연락

그린카드 취득을 위해서는 잠재적 사업주의 동의가 필수적인 관계로 그린카드 신청 전이나 신청 직후 잠재적 사업주와 연락을 취하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

사업주의 연락처는 그린카드 발급대상 채용정보 시스템에 게재되어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상세한 이력서와 그린카드 신청 접수번호를 (가장 좋은 방법은 이메일) 발송한다.

d) 체코 입국

체코 대표부는(체코 내에서 그린카드 신청을 한 경우 체코 내무부가 직접 통지한다.) 체코 내무부의 지시에 따라 외국인에게 그린카드 신청 통과여부를 통지한다. 만약 통과되었을 경우 체코 대표부로부터 그린카드 수령목적의 90일 체류비자를 받게 되며 체코로 입국할 수 있다.

체코 내 입국일로부터 근무일 3일

외국인은 체코 내무부의 망명.이민국의 사전 지정 사무소에서 입국일로부터 3일 내에 그린카드를 수령해야 한다. 그린카드 발급 시 수수료는 1,000CZK이다.

체코 내 거주지 관할 의사부에 거주지 신고를 한다. 거주지 신고 시 숙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²¹ 숙박확인서가 없을 경우 체코 입국일로부터 10일 내에 추가로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린카드 수령 후 외국인은 지체없이 자신의 사업주를 방문한다.

2.6.4. 그린카드 취득자 가족

체코 국내에 최소 6개월을 체류한 그린카드 A형 취득자 가족과 체코 내 최소 1년을 체류한 그린카드 B형(중급 기술자격증 소지자 가족)가족은 체코 내 가족동반목적의 장기체류 허가를 신청할 자격을 지닌다.

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외국인의 가족은 특히 그린카드 취득자의 배우자, 미성년 또는 그린카드 취득자의 성인 부양 자녀 또는 그의 배우자 등이다.

²⁰체코 내에서 제출한 장기 비자신청이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 체코 내 영입허가를 받은 보험사와만 여행자 의료보험을 체결할 수 있다. 체코 국립 은행 웹사이트 참조: <http://businessinfo.cz/cz/clanek/komerčni-druhy-pojištění/seznam-pojištoven-a-poboček-zahranic-nich/1001912/6244/>

²¹체코 내 체류기간 동안의 거주지 확인증; 체코 내 체류기간 동안 거주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의 소유주임을 증명하는 문서, 해당 아파트나 주택 임대 증명서, 아파트나 주택의 소유주의 공증된 외국인 숙박 동의서

2.7 블루카드

2.7.1 일반 정보

블루카드에 관해서는 체코 국내 외국인 체류에 관한 개정법 법령 326/1999과 고용에 관한 개정법 법령 435/2004에 규정하고 있다. 기타 정보는 http://portal.mpsv.cz/sz/zahr_zam/modka 또는 <http://www.mvcr.cz/sluzby-pro-verejnost-informace-pro-cizince.aspx> 에서 열람 가능하다.

체코 내무부가 발급한 블루카드 취득자는 블루카드 채용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체코 내 직종에서 근무할 수 있다. 체코 내무부는 블루카드 발급 후 지체없이 노동복지부에 블루카드 발급 대상자인 외국인 근로자의 신상정보와 블루카드 발급 대상 직종에 대해 전자메일을 통해 전달한다. 유효기간 연장이나 소멸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전달한다.

블루카드는 고용계약에 명시된 기간보다 3개월 초과하여 발급되지만 최장 기간은 2년이다. 블루카드 연장 신청은 체코 내무부에서 한다. 신청서 구비서류는 2.7.3에 언급되었다.

블루카드 발급 고용주가 변경되거나 외국인 근로자의 직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최초 2년 간은 체코 내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체코 내무부는 지속적으로 블루카드 취득 조건에 합당한 경우 블루카드 취득자의 요청에 따라 변경사항을 승인한다. 체코 내에서 2년이 경과한 후 블루카드 취득자는 이러한 변경사항을 3일 내에 체코 내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세계 국민을 위한 블루카드(EU 역외)

고용법 개정법률 435/2004에 의거 체코 내 3개월이상 체류예정이고, 고급인력 채용을 요하는 직종에 고용될 외국인 근로자는 블루카드를 신청할 자격을 가진다.

- 학술연구 목적으로 장기체류허가 신청자
- EU 국민으로 체코 내 체류하는 EU국민의 가족
- 취업목적이나 사업목적으로 체코 내 장기체류 허가로 체류하고 있는 다른 EU회원국 거주민
- 체코 공화국이 체결한 상업 및 투자와 관련한 일부 분야의 개인 입국 간소화 및 임시 체류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라 체코 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 다른 EU 회원국 사업주의 고용인으로 체코 내 국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파견된 외국인²²

2.7.2 블루카드 신청

블루카드 신청서는 외국 주재 체코대표부에서 신청한다. 429/2010법 시행령은 자국(소지여권 발행국, 장기체류허가나 영주권 발행국가도 이에 해당)이 아닌 제 3국에서 비자, 장기 체류허가, 영주권(그린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국가 명단을 규정하고 있다. 체코 대표부는 블루카드 신청자와 인터뷰 할 수 있다.

다음 외국인은 체코 국내의 체코 내무부에 블루카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장기비자 또는 장기 체류 허가로 체코 내에 거주하는 경우
- 다른 EU 회원국에서 발행한 블루카드 취득자로서 체코 내 입국일로부터 1개월 내에 블루카드 발급신청할 자.

블루카드 신청서 양식은 노동복지부 웹사이트 http://portal.mpsv.cz/sz/zahr_zam/modka/form에 구비되어 있다. 신청서는 인터넷상에서 작성하여 인쇄하거나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체코 외국 주재 대표부나 체코 내무부에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관심있는 직종의 고유번호와 근무조건을 기재해야 한다. 고유번호는 체코 노동복지부가 관장하는 블루카드 발급 채용정보 시스템에 게재되어 있다.

²²현행 노동법, 법령 262/2006, 319조 1항 참조

2.7.3 블루카드 발급신청 구비서류

신청 구비서류

- 유효한 여권
- 실제 모습과 동일한 사진 2장, 접수처에서 사진을 찍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체코 내 체류기간 동안의 숙박확인 증빙서류²³
- 고급기술인력 고용계약으로 최소 계약기간 1년으로 법에 규정된 주당 노동일수, 체코 노동 복지부가 공표한 월 평균 급여와 연봉의 최소 1.5배에 달하는 세금공제 후 월급여액 또는 세금공제 후 연봉이 명시된 고용계약서
- 고급기술 자격증
- 규제직종의 종사자는 이러한 직종에 적합하다는 증빙서류.

요구 시 제출 서류

- a) 외국인 본국의 무범죄 사실 증명서나 유사한 서류, 또는 이러한 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본인의 선언서.
- b) 외국인이 지난 3년 동안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국가의 무범죄사실 증명서나 유사한 증명서. 이러한 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선언서
- c)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지 않다는 의사 진단서(법령 274/2004 보건부 시행령이 규정하는 질병)

체코 대표부의 신청 수수료로 1,000CZK에 해당하는 현지 화폐로 지불한다.

블루카드 수령을 위해 외국인은 장기비자 부착 전에 여행자 의료보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로 외국인은 건강상 위급한 의료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여권 소지국이나 체류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국가로의 이송료를 포함한 비용을 보장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건강 보험료는 보험 청구 발생 시 전액 배상 조건으로 최소 60,000EUR여야 한다. 의료보험 증명서는 체코 공화국 또는 다른 EU회원국의 보험법에 따라 보험사를 운영하는 보험사나 EHP협약 가입국 또는 여권 소지국,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이 체류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국가이다²⁴. 외국인이 외국에서 체결한 보험일 경우 보험계약 서류와 함께 체코어로 공증번역된 계약증서와 계약조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을 증명하고 보험금이 60,000EUR이며 전액보장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은 요구 시에는 의료보험 서류에 명시된 보험금 납입에 대한 서류를 제출한다. 블루카드를 취득한 외국인은 근로자의 지위로 공공 의료보험체계의 일부로 체코 국내 입국 시부터 고용 개시일까지의 여행자 의료보험에 관한 증빙서류만 제출한다.

체코 내 입국일로부터 3일 내

외국인은 체코 내무부의 망명.이민국의 사전 지정 사무소에서 입국일로부터 3일 내에 블루카드를 수령해야 한다. 체코 내 거주지에 따른 관할 외사부에 체코 입국일로부터 3일 내에 거주지 신고를 한다.

2.7.4. 블루카드 취득자 가족

블루카드 취득 외국인의 가족에게는 동반가족 장기체류 허가가 발급된다.

이러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은 블루카드 취득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또는 블루카드 취득자의 성인 부양 자녀와 그 배우자이다.

²³19번 참조.

²⁴18번 참조



동 책자는 외국인(EU 국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국민 포함)의 취업 및 비즈니스를 위한 비자 발급, 노동 및 체류허가 절차에 관한 안내서이다.

변경사항 등 상세한 내용 참고처:

- www.mvcr.cz, 내무부
- www.mpsv.cz, 노동 복지부
- www.policie.cz, 경찰청 외사과
- www.mzv.cz, 외무부
- <http://portal.mpsv.cz/upcr>, 체코 노동청
- <http://portal.mpsv.cz/sz> 고용/취업
- www.czechinvest.org, 체코투자청

체코투자청 본사

전화 : +420 296 342 500

팩스 : +420 296 342 502

E-MAIL: fdi@czechinvest.org

WEB: www.czechinvest.org

Stepanska 15, 120 00 Prague 2
Czech Republic

www.czechinvest.org

동 자료는 무료로 배포됩니다.

발행 : 2011년 11월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체코투자청(투자 및 비즈니스 개발 전담기관)은 체코 산업통상부 산하 정부기관입니다.